수수료 부과 및 절차에 관한 기준

제정 2018. 07.17 개정 2019. 11.19

제1조 (목적) 본 『수수료 부과 및 절차에 관한 기준』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이하 "자본시장법") 제 58조에 근거하여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고, 투자자간 형평성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.

제2조 (적용범위) 수수료의 부과 및 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, 법 시행령, 법 시행규칙, 금융투자업 규정 및 관련 법규 이외에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 (용어의 정의)

- 이 기준에서 "수수료"라 함은 집합투자기구 및 투자자문자산에 적용되는 각종 수수료로서 아래 각호와 같이 구성된다.
- 1. 집합투자업자보수 :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보수
- 2. 판매보수 :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 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보수
- 3. 신탁업자보수 :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의 보관자로서의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보수
- 4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: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의 계산 등 집합투자기구의 일반 사무관리 업무수행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보수
- 5.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보수 :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가 집합투자기구를 평가하고 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업무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보수
- 6. 투자자문수수료 :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운용성과와 상관없이 투자자로부터 받는 보수
- 7. 성과보수 : 투자자문자산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미리 정하여진 산정방식에 따라 회사가 받는 보수 및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연동하며 미리 정하여진 산정방식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집합투자업자가 받는 보수(법 제86조, 법시행령 제88조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-65조에 해당하고 집합투자규약에 정의된 경우에만 수령 가능)
- 8. 판매수수료 :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대가로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직접 받는 수수료를 말하며 수수료 지불 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

9. 환매수수료 : 투자자문계약 및 집합투자규약에 정한 기간 이전에 펀드를 환매할 시 일 정한 범칙금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.

제4조 (수수료의 부과기준)

- 1. 수수료 부과에 있어 각 계약의 개별성을 고려하여 책정하되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지 아니한다.
- 2. 수수료 수준은 계약의 특성, 규모, 성과수수료 부과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개별 계약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책정되어야 한다.

제5조 (수수료의 부과절차)

- 1. 수수료 수준은 계약의 특성, 규모,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개별 계약 기준으로 경영진이 결정한다.
- 2. 수수료율을 결정하는 경우 관련 법규에서 수수료에 대해 정하는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- 3. 회사는 집합투자규약상의 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,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 등 거래 상대방 회사와 충분한 혐의를 거친다.
- 4. 회사는 이 기준에 따라 결정된 수수료를 운용기간중 인상등의 이유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 혹은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5. 투자자문수수료의 경우 관련 법규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투자자와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며, 수수료 계산방법등 구체적인 내용은 투자자와 합의하는 계약서에 따른다.

제6조 (설명의무)

자본시장법 제 47조 1항 및 동시행령 53조에 따라,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할경우, 이 기준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설명하여야 한다.

제7조 (공시 및 통보)

- 1. 회사는 법 제 58조 1항에 따라 이 기준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.
- 2. 회사는 법 제 58조 3항에 따라 이 기준을 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기준은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기준은 2019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[별첨 1]

투자자문수수료 등에 관한 기준

■ 투자자문계약 수수료의 산정기준 및 지급시기

투자자문계약과 관련하여 수수료 산정기준과 지급시기는 다음과 같으며 구체적인 수수료율 및 산정방식, 지급시기,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은 회사의 수수료 정책을 기본으로 하여 고객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.

1. 투자자문수수료

- ① 정률기본수수료: 계약금액의 0.5% ~ 3.0%(VAT 별도)
- ② 정액기본수수료:

정률 기본수수료율을 참고하되, 투자자와 회사가 합의한 정액의 금액을 기본수수료로 한다.

- 계약기간 내 계약금액의 증액이나 부분 감액이 있을 경우의 기본수수료는 고객과의 합의에 따릅니다.

2. 성과수수료

- 성과보수의 계산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계약종료일 또는 재설정일로부터 결산일까지로 합니다.
- 계약금액의 0%~7%를 초과한 수익금액의 연 30%이내에서 협의 결정

3. 수수료 지급방법

- 기본 및 성과수수료는 십 원 미만 절사합니다.
- 기본수수료는 계약체결일 또는 계약만료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회사에서 지정하는 계좌로 납입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.
- 성과수수료는 계산기간 종료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회사에서 지정하는 계좌로 납입함을 원칙으로 합니다.
- 결산 후 재설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결산일 현재의 순자산총액을 재설정일로부터 다음 결산일까지 최초계약금액으로 합니다.
- 기본 및 성과수수료 지급방법 등에 대하여는 고객과 회사가 상호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.
- 중도해지수수료는 징수하지 아니합니다.